

회사정리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직불

대법원, 대한토지신탁에 판결

대법원 1부(주심 고현철 대법관)는 대한토지신탁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Y건설의 파산으로 대금을 못받게 됐다며 Y건설의 하도급업체 W사가 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“피고는 원고에게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”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

W사는 2004년 11월 토지신탁으로부터 도급받은 Y건설과 지방의 한 건설공사에 관해 4개월간 4억3천여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가 진행중인 2005년 1월 Y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대금 중 3억1천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발주자인 토지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.

토지신탁 측은 Y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해 W사가 정리채권 중 원금의 50% 및 이자 전액이 면제됐으므로 직접지급청구권 역시 같은 범위로 감축돼야 한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
재판부는 “원사업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해서 직접청구제도가 없어지지 않는다”고 판결했다.○